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 번 안 호 | 309 |
|------------------|-----|

제출년월일 : 1994.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의 사업종료(실적) 보고방법을 개선하여 사학의 자율성 신장, 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정결함액의 사업종료(실적) 보고방법 개선 (안 제8조제1항).

- 현 행

기준재정수입액(세입) 및 기준재정수요액(세출)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집행액 전액에 대한 사업종료(실적) 보고를 받음.

- 개 선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사업종료(실적) 보고시 학교의 재정수요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함.

□ 제안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 '94.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 조례안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94.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발췌) : 덧붙임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합액'이라 함은 보조대상 학교의 관할청이 산정한 보조대상년도의 기준 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관할청이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대상 학교의 당해년도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을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행한다.

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1. 재정결합액 보조사업
2.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3.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기타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의 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도 보조대상 기관에 대하여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총액으로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보조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제6조 내지 제8조 (종전의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 보조대상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제7조 (보조목적이외의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보조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보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보조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 (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다만,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보조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다만,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용종료(실적)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보조목적과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94.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발췌) : 덧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 (목적) 생략 <u>(신 설)</u> | 제1조 (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합액'이라 함은 보조대상 학교의 관할청이 산정한 보조대상년도의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관할청이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대상 학교의 당해년도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을 말한다. |
| 제2조 (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행한다. | 제3조 (증전의 제2조) 제3조 (보조대상) - 교육감이 행하는 -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 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
| 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2. (삭 제) 3. 특수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 |

| 현 행 | 개 정 안 |
|--|--|
|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
| 4. 기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
| (신 설) | |
| | 제4조 (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
| | 1. 재정결함액 보조사업 |
| | 2.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
| | 3.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
| |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
| | 5. 기타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
| 제3조 (보조의 결정) ①충청북도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보조예 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 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 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 학교경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종전의 제3조) 제5조 (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 - - - - - - - - -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② - - - - - 보조대상기관으로 부터 - - - - - - - - - - 총액으로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보조대상기관에 - - - - - -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③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 제4조 (보조금의 교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 제6조 (증전의 제4조) 제6조 (보조금의 교부) 보조대상기관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에 |
| 제5조 (보조목적이외의 사용금지)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교부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 제7조 (증전의 제5조) 제7조 (보조목적이외의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목적 ② 보조대상기관이 1. 보조금을 보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 3. 관할청의 아니한 |

| 현 행 | 개 정 안 |
|--|---|
| 4.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4. - - - - - - - - - - 관할청의 - - - - - |
|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 5. - - - - - - - - - - 만한 희망이 - - - - - |
| 6. 보조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6. - - - - - - - - - - |
| 제6조 (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종전의 제6조) 제8조 (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기관은 - - - - - - - - - - 날부터 - - - - - - - . |
|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다만, 재정결합액 보조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는 제외한다. | 1. 보조사업을 개시한 - - - - - - - - - - 다만, 재정결합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 2. (삭제) | |
| 3. 목적사업이 종료 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 2. 보조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다만, 재정결합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p>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p> <p>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 <p>3.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p> <p>②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의 검사하게</p> <p>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업종료(실적)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보조목적과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
| |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관계법령발췌서

○ 사립학교법

제43조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 1 항 또는 제36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90. 7. 19)

1.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94.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발췌)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 방법 개선

- 경상적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의 보완
 - 기준재정수요를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산정
 - 인건비 : 공립학교 정원기준
 - 운영비 : 공립학교 학생1인당 운영비 기준
 - 지원액중 인건비는 정산, 운영비는 미정산
- 과목별 편성기준

| 구 분 | 편 성 기 준 |
|-------|--|
| 사학지원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학운영지원비인 사립 중 · 고등학교재정결함지원은 다음 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조례등에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지원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법 제81조제1호에 의한 중 · 고등학교· 기타학교는 시 · 도별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공납금이 자율화 되어 있는 학교는 제외○ 보조액 산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재정수입액 : 입학금및수업료징수율 및 법인전입금을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자체기준을 정하여 산출· 기준재정수요액 : 계열별, 학교급별, 규모별에 상응한 공립학교를 기준으로<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는 공립학교 정원기준으로 계상- 운영비는 공립학교 학생 1인당교육비 기준 계상○ 보조 및 사후정산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와 운영비를 총액 보조하되· 인건비는 정산, 운영비는 미정산 |